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 
	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2020.5.8.(금) 조간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<b>담 당 자</b>	양 재 훈 사무관 (02-2100-2661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박 봉 호(02-3145-6700)		최 창 보 팀장 (02-3145-6711) 김 재 형 팀장 (02-3145-6730)

## 제 목 :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」 규정변경예고 (‘20.5.8.~6.17.)

- **자산운용분야 기존규제정비의 일환으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」 개정 추진**
-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요건 정비, 펀드판매사신탁업자의 자료비차 보고 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→ 신탁업자 등의 부담 경감
- 크라우드펀딩 ‘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확대’ →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

### I 개정배경

□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\*는 '19.9.27.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(총 96개)을 심의하여 이 중 **24개를 개선하기로 결정**하였습니다.

\*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, 규제·금융정책 전문가,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

○ 이 중 **17개**(19.3.발표한 「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」 관련)는 개정·시행('20.4.1.) 중이며, 잔여 7개 중 **5개\*** 과제의 개선을 추진합니다.

\* 잔여 2개는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, 외화표시 MMF 도입 관련 사항으로 각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후 금투업규정 개정 추진예정

□ 이와 함께, **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실시\***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.

\*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조치의견서 발급('20.4.21., 금감원)을 통해 '20.5.6.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 중

< 기존규제정비 관련 >

## 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\* 규제 완화 [금융투자업규정 §4-90]

\*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

○ (현행)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는 투자자-신탁업자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\*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중입니다.

\* 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(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), ② 부도채권 등 부실 자산이 아닐 것 ③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, ④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·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(①~④ 모두 충족)

⇒ (개선)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 (매도·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)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\*하겠습니다.

\* 이 경우도 '①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' 외의 요건(②~④)은 충족 필요

## ②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 완화 [금융투자업규정 §4-95]

○ (현행)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·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.

⇒ (개선) 투자자 조회 편의, 신탁사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비치 대신 신탁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\*도 허용하겠습니다.

\* 다만, 투자자가 영업소 등에 방문하여 열람을 요구시 제공할 의무는 부여

## ③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 완화 [금융투자업규정 §7-54]

○ (현행)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⇒ (개선) 증권사 등의 금감원·금투협회에 대한 이중보고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고대상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.

④ **클라우드펀딩 ‘전문투자자 등’의 범위 확대** [증권의발행·공시규정 §2-2의6]

\* 전문투자자 + 전문성·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(전문엔젤투자자 등)

- (현행) 클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‘전문투자자 등’ 범위의 구체적 사항을 증권발행·공시규정에 규정 중입니다.

< 클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>

구분	동일기업당 투자한도	연간 총투자한도
일반투자자	500만원	1,000만원
적격투자자*	1,000만원	2,000만원
전문투자자 등	제한 없음	

\*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, 사업소득+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,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등

- ⇒ (개선) 창업기획자\*(액셀러레이터)의 경우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하여 ‘전문투자자 등’에 추가하겠습니다.

\* 초기창업자(업력 3년내)에 대한 투자·보육 업무 수행(중소기업창업지원법)

⑤ **준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** [금융투자업규정 §4-108]

- (현행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(클라우드펀딩 플랫폼)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규제\*를 일부 준용 중입니다.

\* 내부통제기준의 설정·운용기준,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

- ⇒ (개선) 일부 준용조문이 「금융투자업규정」에서 「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」으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겠습니다.

< **코로나 19 대응 관련** >

□ **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 허용** [금융투자업규정 §4-80의2]

- (현행)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\*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“집합교육”을 받아야만 합니다.

\* '19.7.1.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전 교육이수 제도 도입 → 개정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자의 경우 '20.6.30.까지 교육이수 필요

- ⇒ (개선)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“온라인교육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금융위원회 대변인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